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문계약직(야간약사) 채용공고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같은 곳을 보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 ◆ 우리 병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응시자는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등)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를 금하며,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8. 참고사항 참조
- ◆ 아울러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세부 응시자격은 직무설명자료 참조

채용형태 및 분야			모집인원	응시자격요건
전문계약직 (야간약사)	약제부	약무직	2명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및 지원에 관한 공통사항

- 1) 응시자격 중 면허증(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음
- 2) 각 채용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응시자격미달' 처리함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 항목 수정 등을 이유로 다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최종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수정·삭제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단, 공개경쟁 지원자가 추후 특별채용(보훈, 장애인 등) 대상자로 추천되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 분야 한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포기 각서'를 제출
- 3)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4)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자 포함)는 '응시자격 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5)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탈락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람  
 - 일산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 정보(나이,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6)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7)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 2 우대사항

### ○ 우대자격

구분	우대자격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li> <li>※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로 확인</li> </ul>	5~10점 ※ 개인별 가점 비율 적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li> <li>※ 공고시점부터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장애인 (등록) 자격 유지자</li> </ul>	(경증) 5점 (중증) 10점

※ 기타 국가 및 민간 자격증 가점 미부여

## 3 근무형태 및 조건

### ○ 근무형태

- 야간약사 : 야간 1일 근무(17:30 ~ 익일 08:30), 2일 휴무
- ※ 급여 : 510,000원/일 ... 포괄일급제(연봉외 급여와 식대보조비 포함 금액)

###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 복리후생 ... 별도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임신직원 보호용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휴양시설(콘도 등) 운영
- 복지포인트 및 기숙사 제공
- 직장어린이집 운영
- 문화행사(영화관람, 야구경기 관람 등) 운영 등
- ※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 항목별로 실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 전형방법 및 일정

### ○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 전형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2.5.28.(토)~6.6.(월) 17시	▣ 10일간, 병원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서류심사 및 발표	2022.6.7.(화)~6.9.(목) 사이	▣ 병원 채용홈페이지 안내
▣ 면접 및 증빙서류 검토	2022.6.10.(금)~6.13.(월) 사이	▣ 일산병원 내 또는 외부장소 실시 ▣ 면접당일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 허위 및 오기재 검토
▣ 채용 점검	2022.6.14.(화)~6.15.(수) 사이	▣ 일산병원 내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2.6.15.(수)	▣ 병원 채용 홈페이지 안내
▣ 채용신체검사	2022.6.16.(목)~6.17.(금) 사이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 전 실시
▣ 임용(예정)	2022.6.20.부	-

※ 각 전형별 모든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중 응시자가 없거나 최종결과 모집인원을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상시공고로 전환하여 추진

### 전형단계별 평가내용

-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 확인, 응시자 교육사항 계량평가
- 2) (면접시험) 전문 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인적성, 병원직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  
※ 채용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포함하여 운영**
- 3) (채용신체검사) 일산병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충족 여부 검사(각종 질환검사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준용)  
-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근무자로서 감염관련 항체검사(수두, 풍진, 홍역, A, B형 간염 항체검사) 및 잠복결핵 검사 실시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임용을 취소함

## 5 입사지원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예정) : 2022.5.28.(토)부터 6.6.(월) 17시까지(10일간)

○ 접수 방법 : 일산병원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24시간 가능)

###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채용 홈페이지 주소 : <https://nhimc.recruiter.co.kr>
-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 입사지원서 내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증빙서류 등록(또는 제출) 기간 : 채용 전형일정 참조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해 증빙서류를 등록(또는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6 응시자 증빙서류 확인

○ 대상 : 면접시험 응시자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남성에 한함
- 면허증, 자격증, 이수증 등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확인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확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확인
- 연구논문(원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확인
- 장애인 증명서(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도 함께 제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입사지원서에 기재사항 확인)

○ 제출방법 : 면접전형 당일 제출

※ 학교명, 사진 등 차별적 요소 및 개인정보에 대해 지원자 본인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채용심사위원회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심사기준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및 오기재 여부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허위기재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 전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 제출 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필수) 1부 ... 해당자에 한함  
※ 편입자의 경우, 편입전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응시일 현재 군복무자에 한함) 1부 ...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 증명서(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도 함께 제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이수증 사본 등 1부 ...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 필수

## 8 참고사항

###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일산병원은 면접 진행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응시자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후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마스크는 KF-94이상을 권장
-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면접시험 실시 이틀 전까지 인사부 채용담당자에게 사전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고 시 코로나 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은 비대면(화상면접)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면접은 비대면 면접이 가능한 환경(웹캠 및 마이크, 스피커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을 갖춘 경우 면접시험이 가능합니다.※ 비대면(화상면접) 면접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자에게 사전 별도안내 예정
- ◆ 면접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며 비대면(화상면접)으로 진행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 될 수 있음
- ◆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일산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 관련 사항은 일산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일산병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준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지원자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응시자는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평가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암시하거나 유출할 수 있도록 기재)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를 금하며,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사항 예시

- ※ 성별 관련 : 군경력 중 병사로서 경험 등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기재, 출산 여부 등
- ※ 가족관계 관련 : 결혼 여부, 부모 및 배우자 등에 관한 사항 기재 등
- ※ 학력 관련 : 대학교, 대학원 명칭 기재 등
- ※ 기타 : 자기소개서 內 응시자 실명 또는 연령 기재 등
- \* **경력사항 관련 기관명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필요**

-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됨
  - 입사지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
    - ※ 타 기관 재직 중인 응시자의 경우 경력기간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산정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전형 필수항목 기재 불량(교육사항 입력개수 미달, 자기소개서 내용 미작성 또는 의미 없는 단어를 다수 나열한 경우(예시 : ㅋㅋㅋ, 모모모 등),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복사 붙여넣기 한 경우, 경력기간 불일치 등)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최종합격 후 임용 시 보수등급 산정에 활용함(지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력사항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서류가 지원서 기재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일산병원의 개인정보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일산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한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전화문의>

- ▣ 문의시간 및 연락처 : (평일) 09:00~11:00, 14:00~16:00  
(연락처) 031-900-0046

※ 주말이나 공휴일, 문의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직무설명자료**

## 직무설명자료

<b>채용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계약직 약사(야간약사)…약제부</li> </ul>
<b>기관 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수가관련 연구, 적정진료수준 제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공공의료사업 등 건강보험 모델병원 운영 관련 제반 업무</li> </ul>
<b>능력단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에 의거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약 조제 등</li> </ul>
<b>직무수행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환자의 약 처방에 대한 검토, 조제, 감사, 투약, 복약상담 업무</li> <li>▫ 응급실 및 외래 원내조제 환자에 대한 약 처방 검토, 조제, 감사, 투약, 복약 상담 업무</li> <li>▫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주사제 처방 전·후 감사</li> <li>▫ 약물정보 제공 등의 약제 서비스 업무</li> <li>▫ 기타 약제부 수행 업무</li> </ul>
<b>전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전형 → 면접 및 증빙서류 확인 → 채용 신체검사 → 임용</li> </ul>
<b>교육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학 관련 기본교육 및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등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li> </ul>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에 대한 약물치료학 지식</li> <li>▫ 의약품의 작용기전,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 약물학적, 약제학적 지식</li> <li>▫ 임상약동학, 부작용평가, 영양요법, 주사제무균조제 이론, 정보 및 문헌검색 지식 등</li> <li>▫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지식(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li> </ul>
<b>필요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사용의 적정성 평가 능력</li> <li>▫ 약국 전산 프로그램 이해 및 활용 능력</li> <li>▫ 조제 장비 등 기기 관리 능력</li> <li>▫ 약물정보 자료 수집 및 관리 능력</li> </ul>
<b>직무수행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 일정 계획 준수</li> <li>▫ 환자 및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li> <li>▫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직업윤리 준수</li> <li>▫ 논리적/객관적/분석적 사고</li> </ul>
<b>필요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 면허증 소지자</li> </ul>
<b>직업기초 능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li> </ul>

## 관련 규정 및 법률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8.9.27.>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인사규정 제84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9., 2012.12.21.>

1. 의사직 - 65세
2. 연구직·사무직·간호직·약무직·보건직·의학물리학직 - 60세 <개정 2015.12.24.>
3. <삭제 2015.12.24.>
-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다만, 의사직의 경우는 3월에서 8월 사이는 8월말일에, 9월에서 익년도 2월 사이에는 익년도 2월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11.9.>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서류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면접시험 전에 학교성적 등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 등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